

채무면제·유예상품 안심플랜 세부약관

상품 개시 및 해지

구분	내용
상품 개시	· 상품 가입 후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:00시부터 개시
상품 철회	· 상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신청 철회 가능 · 철회 시 회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 수수료는 반환됨
상품 약정의 해지	· 회원은 언제든지 상품 해지 가능 · 아래의 사유는 자동 해지됨 - 회원이 만 60세의 연령에 도달한 때 - 결제대금 연체 및 신용카드 정지등의 사유로 상품 수수료가 회원의 신용카드로 2개월 연속 결제 승인되지 않았을 때 · 사망으로 채무면제보장을 받은 경우 (단, 가족형의 경우,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채무면제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음)
상품 약정 기간	· 상품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상품 약정은 회원이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됨 (단, 만 60세 도달 시 자동 해지)

상품 수수료

구분	내용
수수료 부과	· 월 상품 수수료는 회원의 개인 카드로 사용된 총 카드 결제금액에 상품 수수료를 곱하여 청구됨 (총 카드결제금액은 회원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청구일 당시의 일시불, 할부, 카드론, 현금서비스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.)
수수료 결제	· 회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됨
수수료 구분	· 결제 승인 시점부터 1개월간의 보장에 대한 수수료임

사망

구분	내용
보장 제공기준	· 상품 기간 중에 보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, 사망일 당시 회원의 채무액 면제
채무액 산정일	· 사망일
구비서류	· 구비서류 : 보장 청구서, 사망입증서류(사망진단서 포함) 및 기타 요청 서류 · 제출기간 :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보장 제한 사항	· 상품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·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동일 질병에 의한 사망

치명적 장애

구분	내용
보장 제공기준	· 보장 대상자가 상품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(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)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, 회원의 채무액 면제 · "치명적 장애"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
채무액 산정일	· 상해의 경우 사고일, 질병의 경우 진단일
구비서류	· 구비서류 : 보장 청구서, 장애인등록증, 장애진단서,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· 제출기간 : 장애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
보장 제한 사항	·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(상해의 경우 사고일, 질병의 경우 진단일)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· 치명적 장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